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루배8단지(4-1M4블록) 영구임대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 06. 22.]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공급일정 등] 및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입니다. 동일자로 공고(2023.06.22일 공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영구·국민 중 택1), 중복신청으로 확인된 경우 모두 무효처리(당첨자 발표 시 제외처리, 계약대상자 제외처리, 계약해지 등) 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모집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보유기준** 및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4. 신청자격(4페이지~)] 확인**)

○ 소득(완화)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월평균소득 150%	5,030,826 원	7,508,064 원	10,077,297 원	11,433,084 원	12,060,738 원	13,052,459 원	14,044,179 원

○ 자산기준 : 총자산 25,500 만원 이하, 자동차 3,683 만원 이하

■ **소득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2년) 이후 1회만 재계약(2년)이 가능**하나, 재계약 만료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예외(추가 2년 재계약)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인터넷 신청**(LH청약센터 apply.lh.or.kr)을 통해 **청약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고문 11~12페이지)

* 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방문신청(공고문 12~14페이지의 [8.신청서류] 지참) 가능합니다. (공고문 12페이지)

☞ 방문신청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신청 일시 : '23.07.03(월) ~ 07.07(금) 10~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상담 · 안내	LH콜센터 ☎ 1600-1004 / ☎ 1670-0003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소명접수 · 계약체결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 ☎ 044)905-2233 (※소명접수/계약기간 한시 운영)

1. 건설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546(반곡동, 수루배마을 8단지))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10. 유의사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m ²)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계			
26A	272	26.25	13.9134	2.4892	18.2829	60.9355	211	803	철근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23.11 (예정)
26B(주거약자)	26	26.25	13.9134	2.4892	18.2829	60.9355	22			

※ 본 단지는 **전기쿱탑이 설치(도시가스 사용 불가)**되며, 영구임대주택 세대 내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이며, 국민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공고문 10페이지의 [6. 주거약자용주택] 확인
- 금회 모집공고는 최초입주자모집(2022.02.28.공고) 및 추가입주자모집(2022.11.23.공고)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해약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최초 입주개시월은 '23.2월이고,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23.11월 입주예정)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모집호수의 50%)로 선정·발표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이 경우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계약면적에서 제외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26A, 26B 임대조건	임대조건				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가군 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2,425,000	121,250	2,303,750	48,240	(+)3,000,000	5,425,000	33,240
					(-)1,000,000	1,425,000	50,320
나군 ²⁾ (일반 등)	13,852,000	692,600	13,159,400	118,470	(+)14,000,000	27,852,000	48,470
					(-)10,000,000	3,852,000	139,300

- 1)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2)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시, 잔금은 입주 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공급일정 등

■ **공급일정**(2023년) * 동일자로 공고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영구·국민 중 택1)

인터넷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3.07.03(월) 10시 ~ 07.07(금) 17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인터넷 신청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07.21(금) 14시 이후	07.24(월)~07.26(수) 10~17시	10.18(수) 10시 이후	(전자)	10.30(월) 10시 ~ 11.01(수) 17시
LH청약센터(apply.lh.or.kr)	LH청약센터	LH세종 임대상담실	LH청약센터	(현장)	11.01(수) 10~17시 LH세종 임대상담실

현장 신청접수(현장 접수 시 서류제출 필요)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apply.lh.or.kr)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한하여 현장접수(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가 가능합니다.
 - ☞ 방문신청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 방문신청 일시 : '23.07.03(월) ~ 07.07(금) 10~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공고문 12~14페이지의 [8. 신청서류] 를 모두 구비하여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신청불가)

- ※ 현장접수,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현장 업무 처리시간은 점심시간(12~13시) 제외입니다.
-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LH청약센터(apply.lh.or.kr)-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24시간(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신청가능합니다.
-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 LH세종 임대상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1층
- ※ 계약체결안내문 등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접수현황 게시) 신청접수 마감 및 현장접수 집계 이후 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의 『분양정보』 → 활성창 오른쪽 상단 『공지사항』클릭 → 임대주택 선택

•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 후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됨)하셔야 합니다.

*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6.22.)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 및 그 밖에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금회 공급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p>*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p> <p>※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ffcc;"> <th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 <td></td> </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p>※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배우자</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외국인 직계존·비속</td> <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태아</td> <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은 공급 신청이 불가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 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

※ 위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50%
	1인가구	2,347,719원이하	3,018,496원이하	5,030,826원이하
	2인가구	3,003,226원이하	4,004,301원이하	7,508,064원이하
	3인가구	3,359,099원이하	4,702,739원이하	10,077,297원이하
	4인가구	3,811,028원이하	5,335,439원이하	11,433,084원이하
	5인가구	4,020,246원이하	5,628,344원이하	12,060,738원이하
	6인가구	4,350,820원이하	6,091,147원이하	13,052,459원이하
	7인가구	4,681,393원이하	6,553,950원이하	14,044,179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자산 기준 : 25,5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5,500만원 이하 2. 자동차 기준 : 3,683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p style="text-align: center;">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

5. 입주자 선정 방법 ※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당해 주택건설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배점기준표(모집공고일 기준)

구분		배점	배점기준		
1.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20점)	1년 미만	12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 한 기간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1~5년 미만	14			
	5~10년 미만	16			
	10~15년 미만	18			
	15년 이상	20			
2. 신청자 연령 (20점)	만40세 미만	14	공고일 현재 기준		
	만40~50세 미만	16			
	만50~60세 미만	18			
	만60세 이상	20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본인 포함) (20점)	1~2인	14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공고문 5페이지 참조)		
	3인	16			
	4인	18			
	5인 이상	20			
4. 소득**수준 (20점)	50% 이하	20	신청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50% : 1인은 70%, 2인은 60%) (70% : 1인은 90%, 2인은 80%)		
	70% 이하	15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	150%	70% (1인90%,2인80%)	50% (1인70%,20인60%)
		1인가구	5,030,826 원이하	3,018,496 원이하	2,347,719 원이하
		2인가구	7,508,064 원이하	4,004,301 원이하	3,003,226 원이하
		3인가구	10,077,297 원이하	4,702,739 원이하	3,359,099 원이하
5. 가점 (10~20점) ※ "신청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 (유형 3가지 이상 해당)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18 (유형 2가지 해당)	* 위 유형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수급자	10 (유형 하나 이상 해당)	▶ 비수급자로서 아래 유형 하나 이상 해당 시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6. 주거약자용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공고문 [4. 신청자격] 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완화모집 입주자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모집공고일 기준)

구분	구분	배점
1.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10년이상	5
	5년이상~10년미만	3
	1년이상~5년미만	2
2. 공급신청자 나이 (공고일 현재 기준)	만75세이상	3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3.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본인 포함, 공고문5페이지 참조)	2인 이상	2
	1인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5.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7.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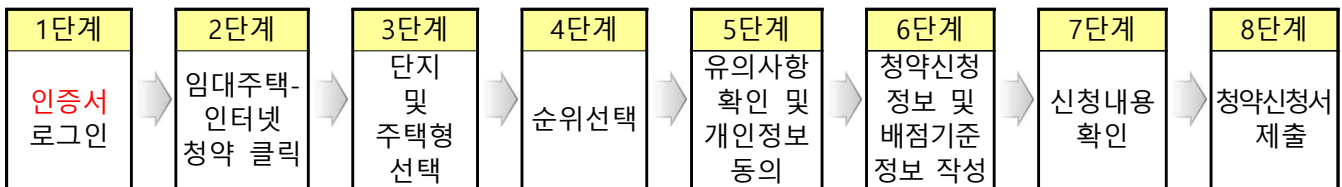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시작일의 오전 10시부터 신청접수마감일의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에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2023.06.22)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는 금회 공급주택의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방문 신청** : 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현장 방문접수로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 방문신청 일시 : '23.07.03(월) ~ 07.07(금) 10~17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
- 구비서류 : 아래 「8.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류 누락 시 신청불가)

8.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3.06.22.)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6.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 **아래 구비서류 중 [양식]은 내청약센터에 게재된 본 공고의 첨부파일 인쇄하여 사용 또는 접수장소에 비치된 양식 사용**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내용	비고	
①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방문신청 시) 신청주택 유형별(26A, 26B주거약자) 공급신청서 양식 구분 작성 ※ 인터넷 신청자는 별도 제출 불요(인터넷 청약신청서로 대체함)	양식①-A 양식①-B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양식②	
③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양식③	
④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양식④	
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각서 양식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양식⑤	
⑥ 주민등록표 등본 (전부표기)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 / 예비배우자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해당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p>⑦ 주민등록표 초본 (전부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p>⑧ 가족관계증명서 (상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제출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p>⑨ 신청자격 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자만 제출> 행정기관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아래 '배점 등 관련 증명서' 참고) 	
<p>⑩ 예비신혼부부 신청자 추가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 외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p>양식⑩-1 양식⑩-2</p>

※ 입주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요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계약 시 입주 전에 각서(소득기준완화 입주자용, 별첨 공사양식), 대기자명단 제외사항 확인서(별첨 공사양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점 등 관련 증명서** (본인이 청약신청 시 체크한 가점에 대한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점 인정됨)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특수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소년소녀가정	-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태아를 세대구성원, 미성년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표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철거민(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제출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필요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발표일 : 2023.10.18(수) 10: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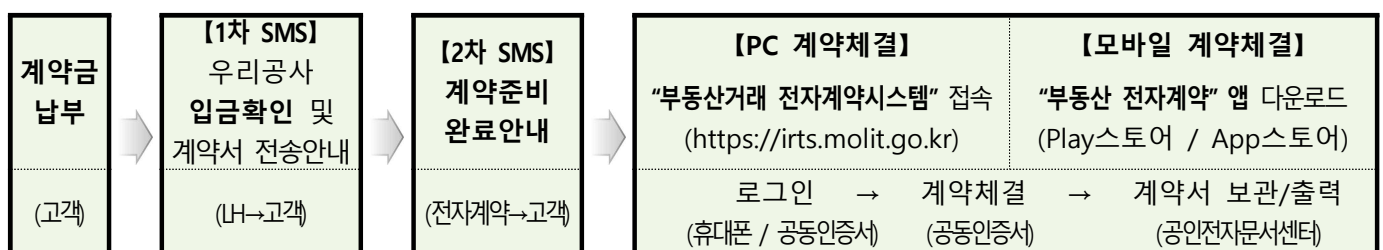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공사 임대청약시스템(<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모집호수의 50%)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계약금 입금계좌 및 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3.10.30(월) 10:00 ~ 11.01(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3.11.01(수) 10:00~17: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현장계약장소 :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어진동))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확인이 가능한 서류 • 계약자 도장(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경우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여권 정보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 있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가 불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 대리인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 서상의 서명일 것), 당첨자 도장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청약신청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단, 당초 모집 기준 충족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1회 추가 허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유형별 재계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구분	유의사항																
	<p>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13 344 1495 584"> <thead> <tr> <th data-bbox="213 344 488 454" rowspan="2">재계약요건</th> <th data-bbox="488 344 863 454" rowspan="2">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th> <th colspan="2" data-bbox="863 344 1495 387">가산 할증비율</th> </tr> <tr> <th data-bbox="863 387 1177 454">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th> <th data-bbox="1177 387 1495 454">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13 454 488 584" rowspan="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td> <td data-bbox="488 454 863 497">73.5%초과 77%이하</td> <td data-bbox="863 454 1177 497">10%</td> <td data-bbox="1177 454 1495 497">20%</td> </tr> <tr> <td data-bbox="488 497 863 539">77%초과 91%이하</td> <td data-bbox="863 497 1177 539">20%</td> <td data-bbox="1177 497 1495 539">40%</td> </tr> <tr> <td data-bbox="488 539 863 584">91%초과 105%이하</td> <td data-bbox="863 539 1177 584">40%</td> <td data-bbox="1177 539 1495 584">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 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요건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가산 할증비율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재계약요건	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가산 할증비율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소득 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계약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신청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 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u>이 주택에 입주할 때</u>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 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입주자 결정 및 계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LH 세종특별본부 주택판매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 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대학용지 조성공사 등 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옥상 및 옥탑에 TV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조망 및 생활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아파트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내에는 펌프실, 저수조, 헬륨, 옥외계단실, 환기팬 등이 위치해 있으며,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용 전기시설물(전기실, 발전기실)은 지하주차장내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실 부근에 위치한 804동에 비상발전기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매연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무선통신보조설비 등)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내 동 주현관, 단지출입구 등 취약부위 및 빈번한 출입이 발생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로비폰)를 부착하여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801동 옥상에 방송공동수신설비(안테나), 801,804,805,806동 옥상, 지상 녹지구간, 지하주차장 등에 이동통신용 옥외안테나(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상태에 따라 설치개소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예비인증 득함(2021년 3월 18일) • 태양광설비는 801동부터 806동까지 전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이 아파트 각 동의 지하주차장 동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복도천장 내부가 기계설비(스프링쿨러 등) 및 전기, 통신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급속,완속충전기)이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주변에는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시설물 등(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자동크린넷이 일부동의 전, 후, 측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투입구 위치는 단지 내 지반 높이에 따라 계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단지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지하주차장 출차주의등(소음,빛) 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전세대 전면부는 발코니 입면분할창으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고, 후면부(복도측)는 사다리차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에는 급수급탕분배기와 난방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장 공간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통합분전반(전기, 통신)은 세대내 노출된 장소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급수, 온수 계량기는 복도내 PD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는 조립식 욕실이 설치되고 욕실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상부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앞 PD내 난방열량계가 설치되며, 점검구로 난방열량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유닛장비, 배수관, 우수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자동크린넷등 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 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며, 환풍 상단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급수, 급탕, 난방, 소방 등 배관이 노출되어 미관에 저하될수 있습니다. • 아파트 일부 PIT층의 출입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PIT층 및 옥상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및 시험을 위한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에는 동별 구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및 제연댐퍼가 동별로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전기쿱탑이 설치됩니다. (도시가스 사용불가) •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되는 냉방용 에어컨의 가동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후면부는 타일시공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후면부 및 하부는 도배 및 바닥장판지 시공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자동크린넷시설 포함)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복도에 일부는 합성수지창호(PL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계단실은 AL-FIX(고정창)과 프로젝트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중소기업판로지원법』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권고』에 의거하여 단지 내 승강기 설치업체가 선정되며 업체는 새한엘리베이터입니다. • 803동(영구임대)은 세대 내 벽걸이형 에어컨이 기본 설치됩니다. • 본 단지 잔·출입시 인접(인근) 회전(원형) 교차로 이용함(U턴 등)을 인자수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 인접하여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로, 지중화용 지상기기, 전력시설물, 통신시설물, 수도시설물, 공동

구분	유의사항
	<p>기반 시설물,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p> <p>■ 마감재 및 발코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p>■ 일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 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민을 위한 어린이집 및 커뮤니티 공간(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주민운동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마련하였습니다. • 단지내 주출입구/부출입구에는 보안사항을 위하여 별도의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쓰레기 투입시에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가연성,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여야 합니다. • 환기시스템용 환기캡이 세대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제 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시행사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체결되었습니다. • 전·입학, 학급편성, 학교운영 등 관련 모든 안내사항은 세종시 교육청 전입학 원스톱 지원센터 (☎ 320-2161~3)로 문의바랍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1670-0003)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노력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자를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 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에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샷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샷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 대상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 발생 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동호열람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부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납부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해당없음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구조관련 등급	1. 내구성	해당없음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3. 중수도 설치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세대내 일조확보율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11. 음식물 쓰레기 저감	★★
	12.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1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14.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15. 우수이용	★★★★
	16.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17.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18. 자연지반 녹지율	★★★
	19. 생태면적율	★★
	20.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2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2. 자연 통풍 확보 여부	해당없음
	23.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여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해당없음
	2. 대중교통의 근접성	해당없음
	3.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4. 도시지역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5.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해당없음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사회적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해당없음
	9. 사회적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해당없음
	10.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해당없음
	14. 방법안전 콘텐츠	해당없음
화재·소방 및 피난안전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해당없음
	2. 제연설비	해당없음
	3. 내화성능	해당없음
	4. 수평피난거리	해당없음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해당없음
	6. 피난설비	해당없음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구분		적용 여부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기계부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가정보일러	미적용(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전기부문	수변전설비 설치(고효율)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고효율)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벽체 및 창호 단열성능	외벽(직접면함)	경질우레탄폼 1종3호 145mm
	외벽(간접면함)	경질우레탄폼 1종3호 100mm
	창호(직접면함)	5mmLE+12mmAR+5mmCL 5mmLE+12mmAR+5mmCL
	창호(간접면함)	5mmCL+6mmAir+5mmCL 5mmCL+6mmAir+5mmCL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4-1M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극동건설(주) 외 9사	-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바탕건축사사무소 (주)나로이앤씨 (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입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호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청각장애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현장 여건상 천장형으로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시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호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내역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6. 문의처

문의처	<p>. (청약문의·상담)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12~13시 제외) ☎ 1670-0003 (평일 09:00 ~ 18:00, 12~13시 제외)</p> <p>. (방문신청)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p> <p>. (소명접수·계약체결)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 ☎ 044)905-2233 (※소명접수/계약기간 한시 운영)</p>
------------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6.22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양식①-A]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 소득완화모집, 26A)

접수번호

신청 유형	단지명	세종 수루배마을8단지(4-1M4)	신청 주택	26 A	가구원수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기재시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로 대체함, 도로명 기재)				
	전화번호 (문자알림 등)	★휴대전화() -	세종특별자치시 전입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년 월 일		

소득 조건	<input type="checkbox"/>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input type="checkbox"/>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input type="checkbox"/> 월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50% 기준 (1인 70%, 2인 60%)	월평균소득 70% 기준 (1인 90%, 2인 80%)	월평균소득 150% 기준		
	1인가구	2,347,719원이하	3,018,496원이하	5,030,826원이하		
	2인가구	3,003,226원이하	4,004,301원이하	7,508,064원이하		
3인가구	3,359,099원이하	4,702,739원이하	10,077,297원이하			
4인가구	3,811,028원이하	5,335,439원이하	11,433,084원이하			

해당 여부 생계·의료수급자 등(가군) 일반 등(나군)

가점 항목 (중복 해당시 모두 체크) 증빙 서류 필요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단,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유족 포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인 3인 이상 부양자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태아 ()인, 태아제외 자녀수 ()인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된 주택에 우선 입주를 희망합니다.
*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 장애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격제한자(불법양도·전대)없음]에 해당함을 서약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되는 경우 당점 취소 및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신청시 기재

관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기타대리인			

* 신청의사 확인업무를 위해 대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7 월 일 신청인 : (인)
위 대리인 : (인) (대리 신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

[양식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 기재,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수요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임대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추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납입인정회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3 . 07 .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

[양식③]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전원 기재, 서명★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본인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2023년 07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식④]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i>(미기재시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로 대체함, 도로명 기재)</i>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3년 07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식⑩-1]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대표신청인

- 성명 :
- 주소 : *(미기재시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로 대체함, 도로명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정보 구입정보	<input type="checkbox"/>	상기 (1), (2)는 ○○○○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관계	<input type="checkbox"/>	상기 (1), (2)는 ○○○○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3년 07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양식⑩-2]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input type="checkbox"/> 분리세대 <input type="checkbox"/>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2023년 07월 일

(1) 대표신청인 : ■■■■■ (인)

(2) 예비배우자 :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

[별첨]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계약용)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미기재시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로 대체함, 도로명 기재)		

본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영구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함

2023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

[별첨]

각 서
(소득기준완화 입주자용)

- 모집공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4-1M4블록 입주자모집공고(2023.06.22.)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영구임대주택을 계약함에 있어 완화된 소득조건에 의해 입주가 허락되었음을 인정하며, 갱신계약 시 공사가 아래의 사항을 적용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최초 갱신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요건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회차 갱신계약 포함) 시 소득기준 완화 입주자에 대한 임대조건 할증이 적용되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94조제3항에 따라 1회(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요건에 따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1회 추가)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2023년 월 일

각서인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

[별첨]

위 임 장 (신청용)

위 임 인(본인, 위임하는 분)

성 명 : (인)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_____ **영구임대주택** 신청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임자와 수임자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며, 귀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3년 07월 일

수 임 인(대리인, 위임받는 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귀하